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포상조례증개정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포상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0

제출년월일 : 1999. 4.
제출자 : 영주시장

1. 개정이유

포상조례 내용 중 포상을 함에 있어 각종 폐로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포상대상중 단체를 기관단체나 그 임·직원으로 함(안 제2조)
- 나. 포상의 종류중 감사장을 감사장 또는 공로상으로 함(안 제4조)
- 다.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의 수여대상을 보완 정비함
(안 제5조 내지 제7조)
- 라.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에 관한 규정 및 특전에 관한 사항을 보완 정비함(안 제10조)
- 마. 표창장은 표창폐로, 감사장 또는 공로상은 감사폐 또는 공로폐로, 상장은 상폐로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바. 공적심사위원회를 공적심의회로 하고 위원 7인을 5인이상 7인 이내로 함(안 제12조의 2)
- 사. 표창장, 감사장, 상장등의 서식을 정비함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서식)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입법예고 결과

영주시포상조례증개정조례(안)

영주시포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증 “시”를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절차에 관한”을 “절차 및 종류에 관하여”로 하고, 제2조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단체나 그 임·직원(이하 “단체”라 한다) 또는 시 소속 공직자로 한다.

제4조증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을 “감사장 또는 공로상, 상장, 모범공무원상”으로, “모범공무원포상및향토개발상”을 “모범공무원상및향토개발상”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 솔선 수범한 자
3. 시 소속 공직자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뛰어난 자
4. 시 소속 공직자로서 정년(명예)퇴직하는 자
5. 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적이 인정되는 자

제6조(감사장 또는 공로상) 감사장 또는 공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공헌한 자
2.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자
3. 시 소속 공직자로서 정년(명예)퇴직하는 자의 배우자
4. 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적이 인정되는 자

제7조(상장) 상장은 순위를 정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모범공무원 포상”을 “모범공무원상”으로, 동조 제1호중 “모범”을 “다른 공직자의 모범”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중 “분기 1회 시상하되 인원은”을 “분기 1회 시상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제1호중 “거주시 시청 민원실”을 “시청 및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표창장은 표창패로, 감사장 또는 공로상은 감사패 또는 공로패로, 상장은 상패로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이나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제1항중 “시의 실과소장 및 산하기관의 장”을 “시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 행정기관장, 읍·면·동장”으로, “상신”을 “추천”으로, “다만”을 “이 경우”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은 영주시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의 2의 제목 “공직심사위원회”를 “공직심의회”로 하고,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공직심사위원회”를 각각 “심의회”로 하며, 동조 제1항중 “7인으로”를 “5인 이상 7인 이내로”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유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를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로 한다.

제13조중 “포상은 정기적으로”를 “포상은 분기별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포상대장”을 “포상대상자 관리”로 하고, 동조 본문중 “기록”을 “기록 관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 1> 내지 <별지 5>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영 주 시 장 ○ ○ ○

<별지 2>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김사장(패) 또는 공로상(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사문 또는 공로문)

년 월 일

영 주 시 장 ○ ○ ○

<별지 3>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패)

() () 상(위)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년 월 일

영 주 시 장 ○ ○ ○

<별지 4>

【별지 제4호서식】

【앞면】

공 칙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 코드(상훈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① 성명						한자 (인명)	
② 주민 등록번호 (생년월일)						③ 군번(군인의 경우)	
④ 본적 (국적)							
⑤ 주소							
⑥ 직업		⑦ 소속					
⑧ 직위		⑨ 등급(작급·계급)			⑩ 근무기간		
⑪ 공적요지 (90자 이내)		⑫ 공적분야					
⑬ 추천 훈종				⑭ 추천순위			
조 사 자							
⑮ 소속				⑯ 직위			
⑰ 직급				⑱ 성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뒷면】

주요 학력 및 경력			
⑯ 년월일	⑰ 학(경)력	⑯ 년월일	⑰ 학(경)력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㉑ 년월일	㉒ 내용	㉓ 년월일	㉔ 내용
㉕ 공적사항			

<별지 5>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

호수	포상 년월일	포상 종별	포상 기관	포상수상자				포상하 게된공 적개요	기념품 또는부 상	비고
				소속또 는주소	직위또 는성명	성명	성별			

신·구조문대비표

【영주시포상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목적)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절차 및 종류에 관하여
제 2 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뚜렷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의 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 2 조(포상대상)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관내에 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단체나 그 임·직원(이하 "단체"라 한다) 또는 시 소속 공직자로 한다.....
제 4 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개발상, 민주시민질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 4 조(포상의 종류) 감사장 또는 공로상, 상장, 모범공무원상..... 모범공무원상 및 향토개발상.....
제 5 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 신설 > <신설>	제 5 조(표창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뚜렷한 자 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 솔선수범한 자 3. 시 소속 공직자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자 4. 시 소속 공직자로서 정년(명예)퇴직하는 자 5. 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적이 인정되는 자
제 6 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제 6 조(감사장 또는 공로상) 감사장 또는 공로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현 행	개 정 안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공헌한 자 2.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자 3. 시 소속 공직자로서 정년(명예)퇴직하는 자의 배우자 4. 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적이 인정되는 자
제 7 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기타 소양고사, 교육성적등이 우수한 경우	제 7 조(상장) 상장은 순위를 정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제 8 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소속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생 략)	제 8 조(모범공무원상)..... 1. 다른 공직자의 모범이..... 2. <현행과 같음>
제10조(민주시민질서상) ① (생 략) ②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은 분기 1회 시상하되 인원은 1회 1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제10조(민주시민질서상) ① <현행과 같음> ②분기 1회 시상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③

현 행	개 정 안
1. 수상자 사진을 거주지 시청 민원실에 게시 2. ~ 5. (생 략)	1. 시청 및 주소지 읍·면·동 사무 소에..... 2. ~ 5. < 현행과 같음 >
제 11 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제1호서식】내지 【별지제3호서 식】에 의한다. <후단신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 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 11 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이 경우 표창장을 표 패로, 감사장 또는 공로상은 감사패 또 는 공로패로, 상장은 상패로 수여할 수 있다. ②상금이나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 12 조(포상절차) ① 제 5 조와 제 6 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 을 때에는 시의 실과소장 및 산하기관 의 장은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공 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 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 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 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 여야 한다.	제 12 조(포상절차) ① 시 본청 담당관·과장, 소 속 행정기관장, 읍·면·동장 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은 영주 시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2 조의 2(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 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포함 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 며 위원장이 유휴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국장, 담당관, 과장중에 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 12 조의 2(공적심의회) ① 심의회는.... ② 심의회의.....

현 행	개 정 안
<p>③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 13 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p> <p>제 15 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p>	<p>③ 심의회.....</p> <p>제 13 조(포상시기) 포상은 분기별로</p> <p>제 15 조(포상대상자 관리) 기록 관리</p>

현 행	개정안
<p>【별지 제1호서식】</p> <p>제 호 표 창 장</p> <p>주소 또는 소속</p> <p>직 성명</p> <p>(표 창 문)</p> <p>년 월 일</p> <p>영 주 시 장</p>	<p>【별지 제1호서식】</p> <p>제 호 표 창 장(패)</p> <p>주소 또는 소속</p> <p>직 성명</p> <p>(표 창 문)</p> <p>년 월 일</p> <p>영 주 시 장 ○ ○ ○</p>
<p>【별지 제2호서식】</p> <p>제 호 갑 사 장</p> <p>주소 또는 소속</p> <p>직 성명</p> <p>(갑 사 문)</p> <p>년 월 일</p> <p>영 주 시 장</p>	<p>【별지 제2호서식】</p> <p>제 호 감사장(패) 또는 공로상(패)</p> <p>주소 또는 소속</p> <p>직 성명</p> <p>(감사문 또는 공로문)</p> <p>년 월 일</p> <p>영 주 시 장 ○ ○ ○</p>
<p>【별지 제3호서식】</p> <p>제 호 상 장</p> <p>○ ○ 상</p> <p>주소 또는 소속</p> <p>직 성명</p> <p>(상 문)</p> <p>년 월 일</p> <p>영 주 시 장</p>	<p>【별지 제3호서식】</p> <p>제 호 상 장(패)</p> <p>○ ○ 상(위)</p> <p>주소 또는 소속</p> <p>직 성명</p> <p>(상 문)</p> <p>년 월 일</p> <p>영 주 시 장 ○ ○ ○</p>

현 행				기 정 안			
【별지 제4호식】 (앞면)				【별지 제4호서식】 (앞면)			
공적조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공적조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① 성명	한자			① 성명	한자 (원명)		
	② 주민등록번호 (영·양식)				③ 군번 (군인의 경우만 기입)		
< 신 셀 >							
⑤ 주소				⑥ 치업	속		
⑦ 직위	⑧ 등급(직급·계급)		⑨ 근무기간 (수령기간)	⑩ 직위	⑪ 등급(직급·계급)		⑫ 근무기간
⑩ 공적요지 (50자 이내)	⑪ 공적 분야			⑬ 훈장	⑭ 훈장 순위		
⑫ 추천 후결	⑬ 추천 순위			⑮ 소속	⑯ 직위		
⑯ 직급	⑰ 성명			⑱ 직위	⑲ 성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⑯	관인		
【뒷면】				【뒷면】			
주요 학력 및 경력				주요 학력 및 경력			
⑪ 년월일	⑫ 이력	⑬ 년월일	⑭ 이력	⑪ 년월일	⑫ 학(경)력	⑬ 년월일	⑭ 학(경)력
<신설>		<신설>		~		~	
<신설>		<신설>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⑮ 년월일	⑯ 이력	⑰ 년월일	⑱ 이력	⑮ 년월일	⑯ 내용	⑰ 년월일	⑱ 내용
⑳ 공적사항				㉑ 공적사항			

(제38회 - 총무 제1차 부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										포상대장										
호수	포상 년월 일	포상 종별	포상 기관	직위 또는 직명	소속 또는 주소	성별	설명	포상 하게 된공 적개 요	기념 품또 는부 상	비고	호수	포상 년월 일	포상 종별	포상 기관	소속 또는 주소	직위 또는 설명	성별	포상 하게 된공 적개 요	기념 품또 는부 상	비고

입법예고 결과

- 예고일 : 1999년 7월 6일
- 예고기간 : 1999년 7월 12일 ~ 1999년 7월 31일(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게재
- 의견제출 : 없음